

[신 · 구조문 대비표]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11조(저축재산의 인출) ①~③ (생략)</p> <p>④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12조에 따른 저축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출청구 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11조(저축재산의 인출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제14조-----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12조, 제13조 신설에 따른 순번이동</p>
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2조(청약의 철회) ① 저축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(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)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. ② 회사는 저축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저축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<별첨>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.</p> <p>제13조(위법계약의 해지) 저축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금소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철회권 관련사항 반영</p> <p>금소법 제47조에 의한 위법계약해지권 반영</p>
<p>제12조~제13조 (생략)</p> <p>제14조(신고인감 등) ① 저축자가 회사에 대하여 저축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(또는 서명감)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3조 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4조~제15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신고인감 등) ① -----</p> <p>-----제15조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순번이동</p> <p>순번이동</p>
<p>제15조 (생략)</p> <p>제16조(저축통장의 재발급 등) 제15조에 따라 저축자가 저축통장, 신고인감 등에 대한 사고신고를 한 경우 회사는 신고인이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저축통장, 신고인감 등을 재발급 또는 변경한다.</p>	<p>제17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저축통장의 재발급 등) 제17조</p>	<p>순번이동</p> <p>순번이동</p>
<p>제17조~제21조 (생략)</p> <p>제22조(거래제한) ① 계좌가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</p>	<p>제19조~제23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(거래제한) ① -----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-----</p>	<p>순번이동</p> <p>조문명 정비</p>

② (생략)

제23조(관계법규등 준수) 저축자와 회사는 자본시장법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,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,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(이하 "관계법규등"이라 한다)을 준수한다.

제24조~제26조 (생략)

<신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관계법규등 준수) -----

----- 「금융
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
령,-----

제26조~제28조 (현행과 같음)

<별첨>

1. 제12조제2항의 "<별첨>에서 정하는" 연체이자는 다
음과 같다.

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

순번 이동 및
관계법규등에
금소법 및 그
하위규정 추가

조문신설에 따른
순번이동